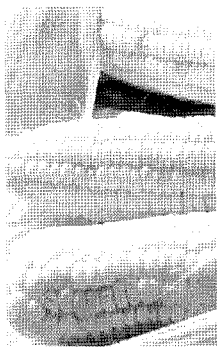


▶▶▶ **골판지용 양허관세/할당관세 적용품목** www.kcca.or.kr



**골판지용(옥수수전분, 변성전분, 매니옥전분)
양허관세/할당관세 적용품목**

-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
- 2009년 공업용전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배정계획 공고
- 2009년 공업용전분 시장접근물량 할당관세 배정계획 공고

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공고 제2009-1호

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[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-153호(2008. 12. 31)]에 의거 우리조합의 양허관세추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.

2009. 1. 2
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

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

제 1 부 양허관세추천

제 1조(목적) 이 요령의 목적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양허관세 대상품목(이하 '원자재'라 한다)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(이하 '양허관세 추천'이라 한다) 및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(이하 '골판지조합'이라 한다)으로부터 원자재를 양허관세 추천받은 실수요자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 등을 정하는 데 있다.

제 2조(대상품목)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.

품목	H·S	품명	비고
옥수수전분	1108.12.9000	옥수수(전분/기타)	공업용(골판지용 등)
감자·변성전분	3505.10.9090	기타변성전분(기타)	공업용(골판지용)

제 3조(추천 및 사후관리대상자) 이 요령에 의한 양허관세 추천대상자는 다음 1호와 같다.

1. 옥수수전분

가.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자
나. 음·식료품 등을 포장하는 포장재로서 전분용기를 생산하는 자

2. 변성전분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

공장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지를 생산하는 자

제 4조(추천물량)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물량 범위내로 한다.

제 5조(양허관세추천 신청서류)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 및 농림수산 식품부 고시 2008-153호(2008. 12. 31) 제7조에서 “기타 추천대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1.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(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)
2. 원료사용 및 제품생산 계획서 1부.
3. 물품매도 협약서 1부.
4. 수입대행계약서 1부.(대행계약자에 한함)

제 6조(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) ①골판지조합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『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』(이하 “추천서”라 한다)를 발급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한다.

제 7조(추천서의 유효기간)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. 다만,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 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.

제 2 부 사후관리

제 8조(사후관리사항) 골판지조합은 양허관세 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후 관리한다.

1. 양허관세추천 품목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.
2. 양허관세추천 물량에 대한 사용량·재고량 등의 보고일치 여부에 관한 사항.
3. 수불관리대장비치 및 정리에 관한 사항.
4.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
제 9조(사후관리방법) 제12조에 의한 양허관세추천 품목의 사후관리는 서면보고를 기본으로 하되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골판지조합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, 골판지조합 이사장은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 10조(점검결과보고) 골판지조합은 제12조에 의하여 현장 확인 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1조(사용기록정리)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자는 원자재의 수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불발생시마다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.

제 12조(행정처분신고)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실수요자는 그 사실을 골판지조합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13조(사후보고)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익월 5일까지 골판지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양허관세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내역
2. 원료사용실적, 원료재고량 및 제품생산량 등

제 14조(제재 및 보고)

- ① 골판지조합 이사장은 제8조 및 제13조를 위반하였거나 성실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수요자에 대해 별표 1의 제재기준에 의거 조치한다.
- ② 골판지조합 이사장은 전항에 의한 조치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5조(기타) 본 요령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 및 지시에 따르며, 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 및 지시에 의거 본 요령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

(별지 제1호 서식)

접수번호 :					처리기간	
					2일	
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						
구분	신청인 (납세의무자)				수입자	
업체명						
주소						
대표성명						
사업자등록번호						
전화번호	(HP :)		(HP :)			
팩스번호						
신청내용						
H·S	품명	수량	금액	수입선	수입예정일자	용도
<p>양곡관리법 제12조, 제13조 및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8-153호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			
					2009. . . .	
					신청인 (인)	
<p>한국곶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귀하</p>						

(별지 제2호 서식)

추천번호 :

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

구 분	신 청 인 (납세의무자)	수 입 자
업 체 명		
주 소		
대표성명		
사업자등록 번호		
전화번호	(HP :)	(HP :)
팩스번호		

신청내용

H·S	품 명	수 량	금 액	수입선	수입예정일자	용 도

유효기간 만료일 : 2009. . 까지

양곡관리법 제12조, 제13조,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8-153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.

2009. . .

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

이사장 오진수 (인)

(별표 1)

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				
위 반 내 용	관련 조항	위 반 회 수 별 제 재 기 준		
		1회	2회	3회 이상
1.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한 원자재를 타인에게 판매, 대여 또는 지정된 용도의 사용한 경우	제 3조	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	3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	원자재 양허관세 추천 취소
2. 사후관리 보고서를 3개월 이상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경우	제 13조	서면경고	6개월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	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
3.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	제 11조	서면경고	6개월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	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
4. 현장점검시 조사를 거부, 기피, 방해한 경우	제 9조	서면경고	6개월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	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
5. 양허관세 추천대상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	제 12조	서면경고	6개월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	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

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공고 제2009-2호

2009년 공업용전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배정계획 공고

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[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-153호(2008. 12. 31)]에 의거 우리 조합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 관리하는 2009년 골판지제조용 옥수수전분, 변성전분, 매니옥전분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 배정물량에 대한 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배정계획

가. 옥수수전분

대상 품명	HS 코드	2009 C/S 물량	추천 용도	신청 자격	양허관세
옥수수전분(기타)	1108.12.9000	37,000톤	공업용(골판지용 등)	아래 [추천대상자]참조	1.8%

나. 변성전분

대상 품명	HS 코드	2009 C/S 물량	추천 용도	신청 자격	양허 관세
변성전분(기타)	3505.10.9090	1,000톤	공업용(골판지용)	아래 [추천대상자]참조	8%

다. 매니옥전분

대상 품명	HS 코드	2009 C/S 물량	추천 용도	신청 자격	양허 관세
매니옥전분(기타)	1108.14.9000	218톤	공업용(골판지용)	아래 [추천대상자]참조	9%

주) 1. 할당관세적용 기간 : 2009년 1월 1일 ~ 2009년 6월 30일까지

2. 추천대상기관 : (가)옥수수전분, (나)변성전분은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, (다)매니옥전분은 한국제지공업연합회
(승인기관 :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)

2. 추천대상자 및 물량 배정기준

가. 추천 대상자

1) 옥수수전분

-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공장 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자
- ② 음·식료품 등을 포장재로써 전분용기를 생산하는 자

2) 변성전분 및 매니옥전분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공장 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자

나. 추천대상자별 물량 배정기준

○ 2009년 총 소요계획량(수입+국산) 및 2008년 추천사용량을 기준으로, 배 정계획 물량대비 요건을 갖춘 업체별 총 소요계획량 비율로 배정

다. 수입관리방식 : 실수요자배정

3. 추천 신청

가. 추천신청기간 및 발급기간

1) 추천신청기간 : 연중(추천대상자별로 배정된 물량 범위 내)

2) 발급기간 : 연중

3) 유효기간 : 교부일로부터 1개월로 하되 30일 기준이며,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까지임
(단, 할당관세는 2009. 6. 31일까지)

나. 추천신청시 제출서류

1)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

- (별표 1, 또는 전자민원시스템(www.utradehub.or.kr) 에서 작성)

2)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

- (최초 추천 신청시 1회에 한함)
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

②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함)

③ 공장등록증 및 골판지제조기 보유 증명사본 각 1부

④ 전분사용 용도 설명서(임의 양식)

⑤ 전분 투입제품 생산 공정도(임의 양식)

⑥ 2009년도 옥수수전분, 변성전분, 매니옥전분 수급계획(안)

⑦ 기타 실수요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

3) 물품매도 계약서(Offer Sheet 또는 Invoice 등) 1부

4) 수입대행계약서 1부(대행계약자에 한함)

5) 최근 월별 원료(옥수수전분· 변성전분· 매니옥전분)· 제품(골판지) 수급실적 및 계획 1부 (과거 1개월 실적 및 신청 당월 포함 3개월 계획)(별표 3)

6) 각서 1부(매년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)(별표 4)

7) 기타 필요시 품목분류사전심사서 등

다. 신청장소

※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기획관리팀

-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33 한신리빙타워 301호

- 전화 : 02-3474-7124, 팩스 : 02-3474-8895

4 기타 행정사항 등

- 가. 추천받은 물량은 반드시 추천서 유효기한 내에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을 완료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매 익월 5일까지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나. 추천받은 자는 추천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법규 및 농림수산물식품 부고시에 따라 조치됩니다.
- 다.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[제2008-153호(2008. 12. 31)]와 골판지조합 세부 요령에 따르며, 양허관세 추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골판지조합 기획관리팀(전화 02-3474-712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09. 1. 2

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
이 사 장 오진수

(별표 1)

접수번호 :

처리기간

2일

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

구 분	신 청 인 (납세의무자)	수 입 자
업 체 명		
주 소		
대표성명		
사업자등록 번호		
전화번호	(HP :)	(HP :)
팩스번호		

신청내용

H·S	품 명	수 량	금 액	수입선	수입예정일자	용 도

양곡관리법 제12조, 제13조 및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8-153호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9. . .

신청인 (인)

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귀하

(별표 2)

2009년도 옥수수전분, 변성전분, 매니옥전분 수급계획(안)

(단위:TON)

구분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총계
		옥수수전분	국내 수입											
변성전분	국내													
	수입													
매니옥전분	국내													
	수입													

- ※ ① '09년도 사용예상량 기재
- ② 위 사용예상량을 기준으로 연간 배정량 산정 예정임

업체명 :
대표자 : 인
담당자 : 인

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

(별표 3)

최근 월별 원료(옥수수전분·변성전분·매니옥전분)·제품(골판지) 수급실적 및 계획

구분	년월	이월			구입			합계			사용			재고		
		수입	국산	소계	수입	국산	소계	수입	국산	소계	수입	국산	소계	수입	국산	소계
원료 (옥수수전분, kg)																
구분	년월	이월			생산			합계			판매			재고		
		수입	국산	소계	SW	DW	소계	수입	국산	소계	수입	국산	소계	수입	국산	소계
제품 (골판지, m ²)																

※제품 m²당 생산시 원료(옥수수전분) 소요량 SW인 경우 g(A/F), g(B/F), g(E/F),
 DW인 경우 g(AB/F), g(BB/F), g(EB/F)
 편면인 경우 g(생산 골을 표기)

※표시단위는 소수점 3자리까지 나타내며, 각 사별로 생산중인 제품에 대해서만 나타냄.



(별표 4)

각 서

귀 조합에 공업용 전분(옥수수전분, 변성전분)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함에 있어,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, 추천을 받아 수입한 전분을 타인에게 판매, 대여 또는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약속 하며, 만약 불법유통, 용도 외 전용,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한 귀회 및 관계법 령에 의한 수입추천 중단 등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 를 제출합니다.

2009년 월 일

회사명 :

소재지 :

대 표 : (인)

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귀하